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7. 04. part1 제71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전북연구원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 | | |
|-----------------------------|---|
| 1. 4 차 산업혁명 시대 , 규제완화가 핵심 | 3 |
| 2.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 4 |
| 3. 산업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5 |

II . 수도권 추진동향

- | | |
|--------------------------------------|---|
| 1.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_ 경기도가 국가발전전략 선도한다 | 7 |
| 2. 수도권 규제 _ 국가 균형발전에 갇힌 '역차별' 딜레마 | 9 |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 | | |
|------------------------------|----|
| 1. “차기정부 국정 목표 … 지역 균형발전 우선” | 10 |
|------------------------------|----|

1. 4 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완화가 핵심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4.0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일간투데이

02
주요내용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 특히 각국 정부는 규제완화 등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

- 주요국들은 앞 다퉈 정부차원에서 중장기 첨단산업 육성 전략
 - 미국의 ‘혁신전략’, 일본의 ‘신산업구조비전’, 독일의 ‘신하이테크전략’, 중국의 ‘제조 2025’ 와 ‘인터넷플러스’ 등이 대표적
- 기업 · 정부 · 학계의 연계를 강화해 첨단 기술 개발에 용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혁신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
- 이들 국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 미국의 ‘제조업혁신센터 (MII)’ 와 ‘국가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 독일의 ‘혁신클러스터’ , 네덜란드의 ‘산업별 필드랩 (Field Lab)’ , 호주 총리실 산하의 ‘4 차 산업 전담반’ 등
- 일본의 규제완화 등 제도정비
 - 그레이존 해소제도’ , ‘기업 실증 특례 제도’ 등 미니 규제완화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
 - 그레이존 해소제도 : 법률적으로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 감독관청이 규제 미적용을 보증
 - 기업 실증 특례 제도 : 기업 스스로 규제 완화를 제안,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샌드박스 :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적용하는 프로그램도 활성화
- 미국의 규제완화 등 제도정비
 - 미국 11개 주에서는 4 차 산업혁명의 첨병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을 마련
 - 펀테크 기술개발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실시
- 이에 국내에서도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4 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 트렌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역할은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제도 지원에 한정
- 이는 민간 부문의 플랫폼 운영과 기술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해 연구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과 규제프리존 제도 등을 적극 도입
-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 부품 소재 개발이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스타트업과 대기업, 정부의 협력이 필요

H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사점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련하여 4 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3/2017032302753.html?right_ju#csidx4b2a5379b6e2601bc0c301416c89bf5

2.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7.04.0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지역발전위원회

02
주요내용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6 일 (목) 14 시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 지역위는 지난 달 말부터 3 회에 걸쳐 '지역발전정책 릴레이 토론회'를 추진
- 한국지역정책학회, 한국지역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지역위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지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이슈들과 관련한 대응방안이 논의
 - 과소화 · 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경쟁력 강화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농업 · 농촌정책연구본부장),
 - 도시재생, 신성장동력 창출 (이영은 LHI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 수석연구원),
 - 지역발전의 공간전략과 거버넌스 구상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 등

여남식 위언장
개화사

- 지역은 국민의 삶의 기반일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근원
-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맞춤형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

송미령
농경연 본부장

- 농촌지역 대부분이 인구고령화와 과소화확산으로 인구소멸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
- 농가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일 것을 제안
- 귀농 · 귀촌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20 호 미만의 마을이 존재하며 소규모 마을의 거점화를 통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당부

이영은
LHI 수석연구원

-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국가사업으로서의 도시재생 추진 필요성을 강조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도시재생이 필수적이지만, 다수 주체간의 갈등문제로 인한 어려움,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촉구

김영수 산업연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

-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제안
 - 인근 시 · 도를 광역권 단위로 구성하고 지역발전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간 종복투자를 피해야함
 - 지역정책의 일관적인 집행을 위해 현행 지역발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행정기구로 전환하여 사업기획, 예산편성권을 부여

시사점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정책 역시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에 대한 공론화 필요

주제

http://www.region.go.kr/bbs/data/list.do?menu_idx=2160

3. 산업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7.04.1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산업통상자원부

02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4. 12. 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6.22 시행) 시행령 (안) 을 입법예고

- 입법예고한 시행령 (안) 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및 기준 , 지정기간 , 주요 지원내용과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
 -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 · 법제처 심사 , 차관 · 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
 - 6 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6. 22. 법 시행과 연계해 차질없이 준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안)**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
 - 전문기관 (산업연구원 등)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하고 , 하반기부터 제도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1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15 조의 2(지정신청 등) ① 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대상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 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군 (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구 (자치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를 기준으로 한다 . 다만 , 지역의 산업구조 등 경제권역에 따라 여러 시 · 군 · 구를 묶어서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시 · 도지사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의체를 통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한다 .

③ 법 제 17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은 지역 내 어느 하나의 산업 (이하 “특정산업” 이라 한다) 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도와 특정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구체적인 지정요건 및 판단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 31 조제 2 항에 따라 설치된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로 하여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 15 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15 조의 3(지정기간)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최대 2 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지정기간에도 불구하고 ,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제 15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 년의 범위에서 1 회에 한해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경우 ,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 및 결정은 제 15 조의 2 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 15 조의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15 조의 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내용) ① 법 제 17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3. 산업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02

주요내용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소관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을 말한다) 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 지원과 지역산업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내 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의 보조 , 융자 , 출연 또는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 방안 등 금융세제부문의 지원
2. 국내외 판로 개척 , 정보제공 , 전문인력 양성 , 경영 · 기술 · 회계 자문 , 또는 공공조달 우대 등 수요창출 부문의 지원
3.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 재취업 등 고용안정 부문의 지원
4. 사업재편을 위한 자금의 보조 ,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 투자활성화 등 사업다각화 부문의 지원
5.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지역혁신역량 구축 부문의 지원
6. 지역내 경제활동 촉진 , 주민의 소득 안정 , 도시재생 등 지역상권 활성화 부문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법 제 17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매 1년마다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 1 항에 따른 지원 실적에 관한 사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지원 실적에 관한 사항
3. 제 15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기준에 대한 지역경제상황 분석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지원방안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 15 조의 5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15 조의 5(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 역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5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이 제 15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이 경우 , 제 15 조의 2 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 20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 21 조제 2 항제 10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이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2 호의 이전공공기관을 말한다 .

④ 법 제 21 조제 2 항제 10 호에 따라 제출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8 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시사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준비되고 있으나 ,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

첨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List.do?bbs_cd_n=81&cate_n=1

1.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_ 경기도가 국가발전전략 선도한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4.0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서울시문

02
주요내용

| 19 대 대선이 29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도와 시 · 군의 71 개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 를 마련

-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는 수도권경쟁력 강화가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
- 경기도는 이에따라 수도권 경쟁력강화 방안을 정밀하게 분석해 경기도의회, 시군, 경기연구원과의 협업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수도권의 그물망같은 규제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 외국행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
- 선진국은 수도권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우리나라도 수도권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짐
- 국가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
- 이어 “1,309 만 경기도민이 희망하는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 공동체’ 를 비전
- 수정법 개정과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경쟁력강화에 나설때” 라고 지적
- 경기도가 내놓은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 저성장 대응을 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
 - 수도권 도시재생 정책의 전면개편
 - 수도권 교통혁명
 - 지속가능한 환경과 에너지
 -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 마련

| 저성장 대응을 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

-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규제방식은 한계에 부딪혔고 국가 경쟁력약화를 초래
- 중앙정부는 수도권 정책방향으로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계획적인 관리로 전환할 것을 요구
-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수도권 정책의 전환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
 - 세계의 지역정책은 대도시권 메가시티 정책으로 이미 20년전부터 전환하고 있는 상황
 - 언제까지 선거에서 지역표를 의식한 수도권 규제강화를 하면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
 - 런던 파리 도쿄 등 해외 도시권의 경우 경기가 위기 상황에 빠지는 시점에서 규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 대도시권들이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국가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주도의 계획으로 전환
-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수도권 정책전환과 수도권의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의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
- 구체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 광역적 도시관리의 필요성과 대도시권 계획체계 마련이 급선무
 - 지역의 여건 및 환경에 맞는 개발추진과 지역 경쟁력 확보가 관건으로 등장

오늘날 경기도 기회
조정실장
조정실장

1.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_ 경기도가 국가발전전략 선도한다

02

주요내용

-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용지 규제합리화도 필수조건
- 규제로 산업시설의 계획입지 확충이 어려워 개발입지에 의한 난개발, 환경오염, 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경기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비롯한 각종 환경관련 규제가 중첩돼 공장용지 확대와 공장 신증설이 제한돼 점차 경쟁력을 상실

수도권 도시재생 정책의 전면개편

- 공공의 기반시설의 비용이 추가가 없이 신규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적극 추진
- 신도시재생은 신개발에서 재활용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하는 계기
- 아파트 도시로서 상징적인 1기 신도시를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개조함으로써 한국적인 도시로서 세계적인 명소로

수도권 교통혁명

- 수도권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도권교통본부를 통합해 수도권 교통을 관리하는 기구로 개편
- 스마트 수도권 제 2 순환도로 건설과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노면전차 도입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나서야 할 시점
- 이를 위해서는 KTX, GTX 조기착공 및 수도권지역에 고른 광역급행열차 서비스 제공과 경기순환철도건설이 추진

시사점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대선공약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저성장 대응을 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사례와 근거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 등에 관한 대응 자료 마련 필요

출처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370>

2. 수도권 규제 _ 국가 균형발전에 갇힌 ‘역차별’ 딜레마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4.1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기호일보

02
주요내용

| 수도권 규제 완화 · 철폐는 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단골 공약 하지만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 갇혀 올작달싹

- 경기북부를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된 ‘규제프리존’ 도입도 신경전
-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4 개 시도에 특화된 정책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 도입을 추진 중
- 경기북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 중으로 규제프리존 도입 시 가평 · 양평 · 동두천 등 경기북부 낙후 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지난 10 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초청 강연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프리존법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주장
- **문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 :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정부가 미르와 K 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
- 이 법에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 을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기관이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라고 정면으로 비판
- **심상정 의원** : 박근혜정부가 입안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은 중단하고 재벌 특혜 중심의 ICT 진흥정책은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 **자유한국당** :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할 당시부터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참여해 안건을 발의
- **바른정당** : 당론으로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정한 상태
-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대선주자들이 전반적으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모습
- **민주당 문재인 후보** :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로 행정수도를 계획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을 주장해 왔다는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소극적 입장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규제프리존법 찬성과 달리 과밀억제권역 등 인구, 경제, 기능 등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는 신중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영남권 지지가 바탕인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단언할 수 없는 처지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수도권 규제 유지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내는 것은 아님
-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지역 공약을 담은 ‘국가 발전 전략 과제’ 제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대선주자들의 공약 채택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시사점

수도권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조회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94329>

1.“ 차기정부 국정 목표 ··· 지역 균형발전 우선”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4.08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전라일보

02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 개최 : 저출산 – 지역공동화 대책 마련,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등 포함, 새달 지역 정책 적극 수립 요청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짐
- 특히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
- 더욱이 ‘제 4 차 수도권정비계획 (2021~2040)’ 수립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더욱 촉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 앞선 3 차 정비계획은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을 기본방향으로 했지만 4 차 정비계획에서는 규제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전환하기로 한 때문
 - 정부는 수도권의 기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질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목표와 비전을 제시한다는 설명이지만 자칫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비수도권 14 개 시 · 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송하진 도지사, 황영철 국회의원)는 새정부 출범전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무협의회
 - 협의회는 그동안 투자활성화란 명목으로 진행된 수도권 중심정책에서 지역성장과 자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이 필요에 공감
 - 새정부의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 강화를 건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데 의견을 모음
 - 또한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저출산 · 고령화 · 지역공동화로 인한 지방소멸 역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공감
- 협의체는 이같은 의견을 새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5 월중 14 개 시 · 도지사 및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중단과 균형발 전 지역정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
 -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새정부가 장기적 시각으로 강도 높은 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
 -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관련법령 제 · 개정에 대해 14 개 시 · 도가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최병관
저라북도
기획조정실장

시사점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강화를 위한 단계적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 대응

출처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517>